문서번호 환경과-330 결재일자 2013.1.15.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

			· —
주무관	환경과장	운영부장	한강사업본부장
한미라	이종혁	이재덕	01/15 한국영
현 조	총무	김소영	
<b>a x</b>	주덕	무관	윤석경

시 민

-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-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

> 한강사업본부 (환 경 과)

#### ☆서울특별시

# 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	검	토 여 부 (■ 표시)	
	• 시	민 :	유 🗆 (	무■
시 민 참 여	• 이 해 당 사	자 :	유 □ ( )	무■
고 려 사 항	<ul><li>전 문</li></ul>	가 :	유 🗆 (	무■
	● 옴 브 즈	만 :	유 🗆 (	무■
	• 법 령 규	정 :	교통 □ 환경 ■ 재해 □	
			기타 🗆 (	무 🗆
법령및기타	• 기 타 사	항 :	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토	<b>2</b> 🗆
고 려 사 항			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연	<u> </u>
			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	; □ 무■
	• 중 앙 부	처 :	유 🗆 (	무■
타자원의활용	• 민 간 단	체 :	ਜ □ ( )	무■
	<ul><li>フ </li></ul>	업 :	n □ ( )	무■
	● 관 계 기	관 :	유 🗆 (	무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<ul><li>민 간 단</li></ul>	체 :	유 🗆 (	무■
2 , 4	● 시 산 하 기	관 :	유 🗆 (	무■

#### - 201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-

## 위탁처리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

한강 둔치 및 수상 등에서 수가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가연성 폐기물을 연간단기를 체결하여 위탁처리함으로써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.

#### □ '12년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

대 상 : 한강 둔치 및 호안가, 수상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가여성 폐기물

성 상 : 고체상태의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

처 리 : 소각(에너지 재활용) 또는 고형연료 재활용

● 수집·운반 :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(응비환경-주)에서 수행

(청소용역 계약조건에 중간 처리장까지 운반 포함)

최근 3년간 위탁처리(소각) 계약 실적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비고
계약물량( <u>톤</u> )	1,530	1,800	2,800	
계약금액(원)	221,203,310	260,392,140	224,000,000	'11년 계약 <del>물량</del>
낙찰단가(원/ <u>톤</u> )	평균144,577	평균144,662	69,399	진량(27 <u>톤</u> ) 이월
계약방법	전자공개 수의계약		지역제한 경쟁입찰 (연간단가계약)	('12년 처리량 2,485 <u>톤</u> )
특이사항	1차:300톤(당초계약)+30톤(증액) 2~5차 : 각 300톤	1~6차 : 각 300 <u>톤</u>		

#### 가연성폐기물 처리대상물량 증가사유 등

- '12, 1, 1, 이후 매립지주변 악취민원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사업장 폐 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증가
- 한강 이용객의 쓰레기 배출형태 변화 (재활용불가 쓰레기<sup>1)</sup>와 매립불가 쓰레기<sup>2)</sup> 혼합배출)로 인한 소각처리 대상 물량 증가

<sup>1) 「</sup>재활용불가 쓰레기」란 분리·선별에 경제성이 없어 재활용하지 않는 쓰레기로서 폐지, 고철(캔류 포함), 플라스틱 (패트류 포함), 유리병류를 제외한 쓰레기를 말함.

<sup>2) 「&</sup>lt;mark>매립불가 쓰레기」</mark>란 재활용불가 쓰레기중 가연성쓰레기로서 스티로폼 · 비닐류 · 플라스틱과 혼재된 종이류 등을 말함.

- 처리방법 변경 검토
  - 한강공원 둔치발생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만이 처리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 개정이전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반입이 불가피함.
  -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는 곤란(자원순화과-19443, 2012<u>.11.23</u>)
  - 수도권매립지에는 구청장만이 생활폐기물 반입차량등록이 가능하므로 매립곤란

#### □ 추진방향

- 가연성외(유리병, 캔류, 고철, 음식물류 등) 폐기물은 철저하게 분리
- 둔치 및 화장실 청소용역업체에서 수집·운반(발생지에서 처리 장소까지)
  - ※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후 남은물량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동일단가로 처리

#### □ 계약 개요

- 건 명 :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(가연성) 위탁처리용역
- 계약기간 : 계약 체결시부터 2014, 1, 31까지
- 예상처리물량 : 2,200톤
  -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물량 산정하여 계약 처리하고 부족되는 예산 확보시 동일단가로 처리
- 계약방법 : 지역제한 경쟁입찰 (연간단가계약)
  - 사 유
    - 입찰참가 자격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으로 한정(운반은 둔치 및 화장 실 청소용역업체가 수행토록 되어 있고, 지역제한 철폐시 폐기물의 신속처리가 곤란)
  -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"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"에는 인접한 시·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(금회에 동규정 적용)
- 입찰참가자격: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(소각전문)하가를 득하고, 처리시설이 서울, 인천,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

## □ 총 소요예산 : 176,000천원

일반회계: 154,600천원

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,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청소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특별회계 : 21,400천원

깨끗한물관리, 한강수질개선, 잠실상수원관리(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)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※ 서울시 물관리정책과-545(2013.1.14) 『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통보』와 관련 폐기물 처리비(특별회계)가 국회승인과정에서 50%이상 삭감되어 예상처리물량이 감소되었으며, 수계위사무국에서 삭감액 전액을 환원추진 예정으로, 환원시에 폐기물 처리물량 설계변경 처리

## □ 향후 일정

- '12. 1. 17 ~ 1월말 :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
- '12. 1월말 : 입찰공고
- '12. 2월 중순 : 계약체결 및 폐기물 반출.
- 붙임 1. 산출기초조사서 1부.
  - 2. 견적서 3매.
  - 3. 과업지시서 1부. 끝.

# 과 업 내 용 서

본 과업내용서는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강사업본부를 "갑", 계약상대자를 "을"이라 칭하며, 아래와 같이 위수탁 업무를 수행한다.

## Ⅰ. 과업의 개요

1. 과 업 명: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(가연성) 위탁처리 용역

2. 성 상: 한강공원 둔치·수중·수상에서 발생된 폐기물(가연성)

3. 처리예정량 : 2,200톤

**4. 과업 기간 :** 착수일로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

#### Ⅱ. 과업의 목적

한강사업본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가 불가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 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.

### Ⅲ. 과업의 범위

본 계약은 '갑'이 '을'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(가연성)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Ⅳ. 과업의 내용

1. 과업의 이행사항

가.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4. 01. 31까지이며, "갑"의 요청에 따라 차기 계약업체와 계약 시까지 처리단가의 변동 없이 연장처리 할 수 있다.

나. "을"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비가 최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, 처리장비 고장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"갑"이 요구하는 폐기물 처리를 거절·중단·유보해서는 아니된다. 계약기간내에 상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"갑"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## 2. 과업의 의무 및 조건

- 가. 본 과업내용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처리가 불가한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계약에 적용한다.
- 나. 폐기물의 운반은 "을"이 지정한 처리시설(적환장)까지 "갑"이 운반하며, "갑"이 폐기물처리를 요구할 시 처리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쌍방 확인 후 처리한다.
- 다.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책임은 "을"에게 있다.
- 라. "을"은 폐기물 처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야 하며,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만형사상 책임은 "을"이 진다.
- 마.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, 폐기물관리법·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고시·훈령·지침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, "갑"과"을"의 의견이 서로 다른경우 "갑"의 해석에 우선 따른다.
- 바. 폐기물의 반입량 확인은 차량별로 "갑"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"을"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, "을"은 반드시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고, 계량시설의 고장,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, 이때 발생되는 계량비용 등은 "을"이 부닦한다.
- 사. 폐기물의 처리예정량, 처리기간 등은 한강사업본부 폐기물처리 정책변경이 나 현장여건에 의해 증·감 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"을"은 "갑"에게 민·형 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 쌍방간의 합의시 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.
- 아. "을"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받은 시설, 장비에 의 거 처리하여야 하며, '갑'이 위탁하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

하여야 하고,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 위탁 할 수 없다.

- 자. "갑"이 요구하는 경우 "을"은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.
- 차. 용역 착수 전에 "을"은 폐기물 처리 허가증 및 과업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"갑"에게 제출한다.
- 카.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타. "을"이 폐기물을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"갑"은 연료 매수자에 대한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폐기물 소각에 따른 에너지를 재활용 하는 경우 에너지를 공급 받는자나 공급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"을"은 관련 정보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
### ♡. 행정사항

#### 1. 하자책임관계

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을 해지할 수 있고,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.

- 가. "을"이 본 과업내용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물의를 야기하거 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"갑"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- 나. "을"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, 1개월 전에 "갑"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때
- 다. 폐기물관리법 위반시나 「2. 과업의 의무 및 조건 "자"항」을 위반하는 경우

#### 2. 대금지급방법

"을"은 폐기물의 반입일자, 반입량, 차량번호,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『폐기물인 계서』를 작성 기록하여 위탁처리비 청구시 『폐기물인계서』 원본과 반입대장을 첨부하는 등 관련 제반서류를 기성부분 준공검사원과 함께 월별로 청구할 수 있다.

#### 3. 신의성실의 의무

과업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#### 4. 재판관할권

갑"과 "을" 사이에 분쟁 발생시에는 "갑"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## 견 적 서

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

무

서기 2013년 1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1 3 7 - 8 1 - 0 9 5 8 2 상 호 주 식 회 사 케 이 비 텍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귀중 주 소 인천 서구 석남동 223-21 전 화 0 3 2 ) 5 7 1 - 3 2 2 4

丑

대

자 박

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.

품 명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세 액 H 卫 폐합성수지 1 톤 150,000 150,000 15,000 계 \* 운반비 제외 참 卫 \* 일반소각 처리

## 견 적 서

견적번호: 3R - 20130109

일자: 2013.01.09

To: 서울시 한강사업본부

Attn: 환경과

한국쓰리알 환경산업㈜				
	대표이사	이 은 이		
사업자번호	검자번호 215 - 87 - 13049			
주소	서울 송파구 장지동 692-2 동남권유통단지 5블럭			
전화번호	02)401-6789 FAX 02)401-6644			
견적담당자	김명희 전화번호 02)401-6789			
E - mail kmh@3r.or.kr				

아래와 같이 한강공원 둔치 및 수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단가 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.(부가세 별도)

합계금액 : 일금	원정 (₩						원정)
품명	단위	수량	운반비	처리단가	공급가액	처리방법	비고
한강공원발생폐기물	Ton	1	-	90,000		재활용	VAT 별도

(기타조건) 1. 처리장소까지 도착도 기준임 (운반비 미포함)

2. 부가세 별도입니다.

## 산출기초조사서

건 명: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(가연성) 위탁처리용역

산출금액: 금176,000,000원(금일억칠천육백만원정)

(단위:원)

			산출조	사근거 (단가:	산 출 가 격		
구 분	단위	단위 수량	삼호환경 기술(주)	한국쓰리알 환경산업(주)	(주)케이비텍	단 가	금 액
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	톤	2,200	80,000	90,000	150,000	80,000	176,000,000
부가가치세						면세	
합 계						80,000	176,000,000

※ 수집, 운반비 별도(수집,운반은 한강사업본부 청소용역업체에서 수행)

2013. 1. .

조사자 : 지방공업주사 한 미 라 (인)

확인자 : 지방공업사무관 이 종 혁 (인)

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(분임)경리관 귀하

#### 면 적 서

견적번호: 130109-1

일자 : 2013년 01월 09일

TO :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

ATTN: 한미라 님

전화: 02)3780-0786

팩스 :

	사업자	220-8	31-9814	15		
	상호	삼호환경기술㈜	성명	이 장 근		
공급	소재지	경기 용인 남사 북리-84-6				
급   자	전화	031)322-3507 (내선 106)				
	9					
	홈페이지 www.samhoenv.co.kr					

※ 담당자: 정대섭 과장 (010-9403-9914)

귀 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한강공원 둔치·수중·수상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(폐합성수지류 등)의 재활용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.

번호	항 목	단 위	단 가	비고
1	가연성폐기물 처리	톤	80,000원	폐기물종합재활용업 (업종코드: 6786)

- 도착도 기준 입니다. (운반비 별도)
- 부가세 제외금액 입니다.
- 본 견적은 30일간 유효합니다.